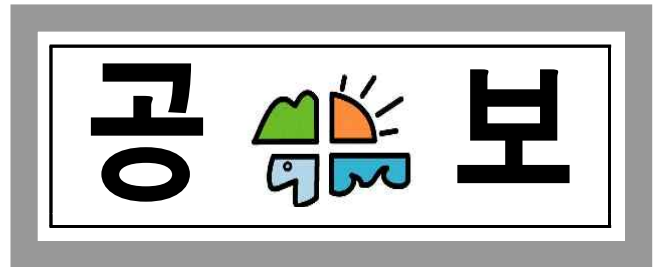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08호 2021년 1월 29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영랑호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2

공 고

- 2021년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 공고 4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공람 공고 5

입법예고

-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
-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8
-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23
-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30
-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37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영랑호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영랑호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9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공간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	영랑호 유원지	금호동 600-7 일원	1,091,535	1,019,535	-	76. 9. 29 (강고 제76-104호)	

나. 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영랑호 유원지	• 운동시설(화랑도체험장) (부지면적) 19,532㎡→27,759㎡(증 8,227㎡) • 녹지시설: 341,057㎡→332,830(감 8,227㎡)	• 2019년 4월 산불로 소실된 화랑도 체험장 시설정비 및 확장

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번호	구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	합계	1,019,535	1,019,535		28,312.61	28,312.61		
-	휴양시설	201,171	201,171					
1-1	콘도미니엄1	80,090	80,090		14,050.02	14,050.02		
1-2	콘도미니엄2	2,288	2,288		371.76	371.76		
1-3	콘도미니엄3	36,264	36,264		2,562.65	2,562.65		
1-4	콘도미니엄4	16,329	16,329		858.18	858.18		
1-5	야영장	66,200	66,200		1,350.00	1,350.00		
-	유희 및 운동시설	101,110	101,110		1,320.00	1,320.00		
2-1	숲어드벤처파크							
-	운동시설	28,832	37,059		6,600.00	6,600.00		
3-1	화랑도체험장				6,600.00	6,600.00		
3-2	체육시설							
-	특수시설	167,875	167,875		900.00	900.00		
4-1	식물원1							
4-2	식물원2							
4-3	식물원3							
4-4	수변광장	5,855	5,855		200.00	200.00		
4-5	잔디광장	16,390	16,390					
4-6	파크닉광장	10,090	10,090		150.00	150.00		
4-7	세계테마정원	42,350	42,350		250.00	250.00		
4-8	조경휴게지1				200.00	200.00		
4-9	조경휴게지2				100.00	100.00		
-	관리시설	123,320	123,320		300.00	300.00		
5-1	공용주차장1				100.00	100.00		
5-2	공용주차장2				100.00	100.00		
5-3	공용주차장3				100.00	100.00		
-	중로1류							
-	중로3류							
-	소로1류							
-	소로2류							
-	소로3류							
-	녹지시설	341,057	332,830					
6-1	녹지		332,830					
-	기타시설	56,170	56,170					
7-1	개발유보지							

2021년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 공고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 초 시 장

1. 2021년 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835,000원/m³
 -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914,000원/m³
 - 나.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구경별부담금 : 90,000원(D15) ~ 8,000,000원(D100)
- ※ 세부 산출기준 붙임참조

2. 과년도(2020년) 생산자물가상승률 : -0.46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공람 공고

1. 속초시 노학동 63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변경 :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 : 기간연장)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5일

속 초 시 장

가. 공고목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기간연장)

나. 공고내용

1) 제한지역·제한기간

구 분	위 치	면적(m ²)	제한기간	
			당 초	변 경
소야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속초시 노학동 63번지 일원	719,996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2) 제한사유

- 역세권개발 수립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개발의 장애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다. 공람기간: 공고일(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라. 공람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033-639-2447)

마. 관계도서: 생략(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1월 2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축진을 통해 농어업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토대로 돌아오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해 규정(안 제3조 ~ 제4조)
- 다.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에 관해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라. 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해 규정(안 제7조)
- 마. 수당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해 규정(안 제8조 ~ 제9조)
- 바. 수당 미지급 및 환수에 관해 규정(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43, 속초시농업기술센터(지도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589, 팩스 033-631-6161, 전자문서 lch10128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지도팀(☎033-639-25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

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의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속초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로 본다.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시행지침 등 상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편의개선을 위하여 일부 항목들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신청·계약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안 제7조)
- 나.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하여 정비(안 제13조)
- 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맞게 변경(제16조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 삭제)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43, 속초시농업기술센터(기반조성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907, 팩스 033-631-6161, 전자문서 kimdansoon@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팀(☎033-639-29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를 “신청 및 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제11조제1항 각 호”를 “제11조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기계 임대차 신청 및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신청인)				
속초시장	성명		성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임대차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규격		수량	대
부속작업기		규격		수량	대
		규격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대료	금 원(금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속초시	동	번지		
작업면적	㎡ (일 평)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같이 임대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에게 확인받아야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2.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운반비, 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4. 사용 후 보관 시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5. 농업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할 수 없다.
6.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받고 반납한다.
9.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차인(신청인) : (인)

속초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제7조(신청·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u>신청서</u> 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7조(신청·계약) ① ----- ----- ----- <u>신청 및 계약서</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며, 계약서의 사용조건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u>별지</u> <u>제1호서식</u> 에 따라 ----- -----.
제13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6개월 이내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임대계약의 제한)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1조제1항 각 호</u> 에 해당하 는 경우	2. <u>제11조의 어느 하나</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별지 제2호서식</u> 의 계약 조건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u>별지 제1호서식</u>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1. (생략)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
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
항

4. (생략)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4. (현행과 같음)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호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26. ~ 2021. 1. 3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산불방지 활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신선익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단체 및 개인의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안 제4조)

라. 포상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속초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개인
2. 산불방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26. ~ 2021. 1. 3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중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중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부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외부재원”이란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재원(시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26. ~ 2021. 1. 3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관내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4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6조)

리. 사업추진 등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잇길”이란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속초시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에 지정·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잇길을 걷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 등은 사잇길을 이용함에 있어 사잇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원칙) 사잇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길(인도, 마을길, 숲길, 제방길 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
3. 친환경적으로 조성·관리 운영한다.
4. 사잇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걷기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사잇길의 조성 및 관

리·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잇길 조성·관리·운영 기본 방향
2.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코스의 보완
3.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대책
5. 동네 문화와 상권 연계 방안
6. 홍보 및 교육사업
7. 걷기 행사 및 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사잇길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사잇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잇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사잇길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과 활성화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 관광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26. ~ 2021. 1. 3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사업 (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사업 (안 제4조)

라. 응급처치 교육사업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제5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 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 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동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